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4 - 10 - 046호 (사건번호 : 201401조사006)

안 건 명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LG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27번지
대표이사 이상철

의결연월일 2014. 3. 13.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14일(신규모집 금지 시기는 차기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후 통보) 동안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 정지는 가입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명의 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재판매 등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 가입자 모집행위(MVNO사업자의 신규 가입은 제외),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을 포함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8,25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 사실

1.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10,874천명으로 전체 시장의 19.9%(‘13.12월말 기준)를, 매출액은 4조 3,560억원(‘12.12월말 기준)으로 18.6%를 점유하고 있다.

<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명, 십억원)

구 분	SKT	K T	LGU ⁺	합 계
가입자수 (점유율, %)			10,874 (19.9)	
매 출 액 (점유율, %)			4,356 (18.6)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2.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가.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00.6월 ~ ‘06.3.26)

정부는 중고 단말기 양산·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00.6월부터 이용약관에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후에도 장려금 신설·증액,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03.3.27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다.

— < 관련 조항 > —

※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보조금 예외 허용('06.3.27 ~ '08.3.26)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발생시켰다. 이에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06.3.27일부터 2년간 18개월 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 < 관련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LGU+의 舊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5조(단말기 보조금 지급)

-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사는 단말기를 제1항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임대 또는 대여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전기통신사업법36조4의 제1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따라 가입 회선별로 2006년 3월 27일부터 2008년 3월 26일까지 1회에 한정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 보조금의 원칙적 허용 및 부당한 차별 규제('08.3.27 ~ 현재)

'08.3.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5가 일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의무약정제와 연계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관련 조항 〉

※ LGU+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5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 (이하“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35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고객의 기여도 또는 단말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③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 ④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⑤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약관 위반, 이용자 차별 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재 가능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5회('10.9월, '11.9월, '12.12월, '13.3월, '13.7월)에 걸쳐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와 관련,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³⁾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0. 9.24일 '09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88.8억원의 과징금(SKT 114.8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을 부과, '11.9.19일에는 '11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10년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36.7억원의 과징금(SKT 68.6억원, KT 36.6억원, LGU+ 31.5억원)을 부과, '12.12.24일에는 SKT 22일, KT 20일, LGU+ 24일의 신규 모집금지 등과 함께 총 119억원의 과징금(SKT 68.9억원, KT 28.5억원, LGU+ 21.5억원)을 부과, '13.3.14일에는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53.1억원의 과징금(SKT 31.4억원, KT 16.1억원, LGU+ 5.6억원)을 부과, '13.7.18일에는 KT 7일의 단독 신규 모집금지 등과 함께 총 669.6억원의 과징금(SKT 368.8억원, KT 191.5억원, LGU+ 97.2억원)을, '13.12.27일에는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과 총 1,064억원의 과징금(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부과하였다.

3. 이동전화 시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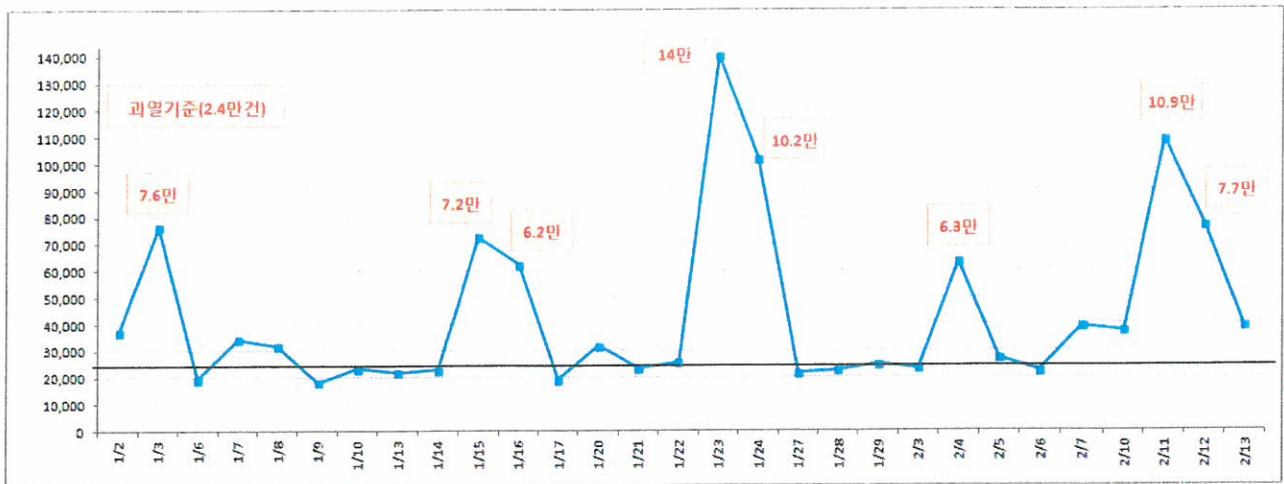
'13.1.2~2.13. 기간 중 시장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전체 일평균 번호 이동 가입자수(이하 MNP)는 평균 4.3만 건으로 과열기준(일평균 2.4만 건)을 초과하였고, 이는 '13.12월 심결 시 조사기간 평균 MNP(2.7만), '13.7월 심결 시 과열기간 평균 MNP(3만)도 크게 초과한 것이다.

1)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3)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

<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게 의결서를 송부한 '14.1.3일(시정 명령 효력 발생일) MNP는 7만 6천 건으로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14.1.10일 이통3사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이후에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제재할 것을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1.23일 14만 건, 1.24일 10만 2천 건 등 MNP 규모가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2.4만건)을 5배 이상 초과하였다.

또한 사실조사 실시 이후에도 2.11일 MNP 규모가 또다시 10만 건을 초과하는 등 조사대상 전 기간 동안 시장과열이 지속되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지칭하여 123대란, 211대란이라 하였는데 일부 단말기는 0원에 판매되기에 이르러 한때 단말기 명칭이 온라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일도 발생하였다.



'123대란'부터 '211대란'까지... 갤럭시노트3 보조금 변화 과정보니

이투데이 2014.02.14 (금) 오전 9:53

'123대란'으로 불렸던 이날 갤럭시노트3가 19만원, 아이폰5S가 0원까지 떨어졌다. 갤럭시노트3에... '211 대란'에서는 갤럭시노트3의 할부원금(실가액)이 10만원, 아이폰5S가 5만원대까지 떨어졌다. 211대란은 지난...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211 핸드폰대란, 아이폰5S 10만원까지 떨어져 위클리오늘 2014.02.11 (화) 오후 12:48

211 핸드폰대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11 핸드폰대란, 이럴 때 얼른 갈아타야죠"와 "211 핸드폰대란, 언제 또 올지 모르니 답습", "211 핸드폰대란, 123대란 때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성공했네요" 등의 반응을...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211대란, 스마트폰 가격 폭락...공짜부터 아이폰5S는 10만원

민중의소리 2014.02.11 (화) 오후 12:52

211대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11 핸드폰대란, 이럴 때 얼른 갈아타야죠"와 "211 핸드폰대란, 언제 또 올지 모르니 답습", "211 핸드폰대란, 123대란 때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성공했네요" 등의 반응을...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211 보조금 대란'...이통사는 네 탓 공방 ZDNet Korea 2014.02.11 (화) 오후 2:33

123대란, 211대란 등 일련의 보조금 과당경쟁 원인은 시장점유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SK텔레콤은 50% 절대 사수율, KT는 30% 유지율, LG유플러스는 점유율 확대에 따른 20% 달성을 내건 상태다. 이통사들은...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211대란, 아이폰5S 10만 원에 줄 이어... "123대란 능가해" 동아일보 2014.02.11 (화) 오후 1:44

출처=아이폰 홈페이지 [동아닷컴] '211대란' 지난 123대란에 이어 '211대란'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다.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각종 스마트폰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이폰5S...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이와 같은 공짜 수준의 단말기 판매 정보는 온라인 오픈 커뮤니티, 폐쇄몰,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부 시간대 및 지역에 전파되었고, 실제로 공짜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새벽 시간에 현장유통망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기이한 사태도 벌어졌다. 이처럼 온라인 상의 스팟성 할인 판매뿐만 아니라 현장유통망에서도 시간대 및 단말기에 따라 보조금 정책이 차별 적용되는 등 유통망을 가리지 않고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보조금 수준 또한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가(60만원 이상) 많았고, 판매시간대, 유통망, 지역, 단말기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II. 사실조사 결과

1.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은 '14.1.2일부터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피심인의 유통망을 현장조사 하였다. '14.1.2~2.13.기간(이하 "조사대상 기간")의 신규·기변 가입 건에 대해 영업정책·보조금 지급 수준·이용자 차별 여부 등을 현장 수집자료, 전산자료, 대리점 단가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수시로 마케팅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지점 등에 전파하였으며, 지역본부(지점 포함)는 단말기별로 자체 리베이트 정책을 추가하여 대리점에 정책서를 배포하였고, 대리점은 자체 편당능력을 고려한 최종 단가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사적 계약 관계에 있는 판매점에 배포하였으며,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판매하였다.

특히 피심인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과열을 유발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사실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서 및 단가표를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성한 뒤 추가 영업정책은 구두 혹은 문자로 신속하게 전파하거나, 단가표의 리베이트 규모를 암호화하였다. 또한 정식 가입신청서 및 전산 상에 보조금 지급사실 및 규모를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서식지를 만들어 보조금 지급 현황을 관리하는 등 보조금 지급사실 및 규모를 은폐하였고, 일정기간 이후에 전산 상의 할부원금을 조정하거나 현금지원(페이백) 하는 방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방해하였다.

< 할부금등 대납확인서 >

([REDACTED]) 고객님의 2014년 2월 12일 (신규, MNP, 보상) 가입 건에
대하여 본사([REDACTED])가 ☐ 할부금등 (40,000 원) 대납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확인 사원명 :

고객이체계좌 : ([REDACTED] 은행) (예금주: [REDACTED])

고객이체계좌 : [REDACTED]

고객전화번호 : [REDACTED]

고객성명 : [REDACTED]

2014년 2월 12일

☐ 가입비(원) ☐ 위약금 및 기타(원)(원)(원)

< 할부금등 대납확인서 >

([REDACTED]) 고객님의 2014년 2월 10일 (신규, MNP, 보상) 가입 건에
대하여 본사([REDACTED])가 ☒ 할부금등 (370,000 원) 대납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확인 사원명 :

고객이체계좌 : ([REDACTED] 은행) (예금주: [REDACTED])

고객이체계좌 : [REDACTED]

고객전화번호 : [REDACTED]

고객성명 : [REDACTED]

2014년 2월 10일

☐ 가입비(원) ☐ 위약금 및 기타(원)(원)(원)

2. 조사 대상 건수

조사대상 기간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신규 가입 17,189건(번호이동 14,318건, 일반 2,871건)⁴⁾과 기기변경 가입 5,132건을 포함하여 총 22,321건을 분석⁵⁾하였다.

〈 조사대상 건수 〉

(단위 : 건)

구 분	신규		기기변경	합 계
	번호이동	일 반		
LGU+	14,318	2,871	5,132	22,321

※ 평일 개통 기준으로 조사대상 건수 분석

3. 보조금 차별

가. 기간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한 가입자당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442천원이며, 경고일('14.1.10.) 이후* 평균 보조금은 462천원으로 조사대상 기간 평균 보조금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별 평균 보조금 차별 정도는 최소 299천원에서 최대 594천원으로 나타났다.

〈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 추이 〉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 출고가	평균 보조금	보조율
조사대상 기간 ('14.1.2~2.13.)	838	442	52.8%
경고일('14.1.10.) 이후	841	462	54.9%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일평균 금액임

※ 방통위 경고 이후 정책반영도(순응 정도)를 지표로 고려하여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4) 신규 가입자는 일반(010)과 번호이동(MNP : Mobile Number Portability)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음

5) 단말기 구매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중고폰 개통건과 선불요금제 가입건, 태블릿 PC 및 무선인터넷 모뎀 가입건 그리고 피쳐폰(실버폰) 개통건 및 2G 서비스 가입건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나. 가입형태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451천원이며, 신규 가입자 내에서도 번호이동 가입자는 평균 보조금을 452천원 지원한 반면 일반 가입자는 445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변경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414천원으로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보다 37천원 낮았는데, 이는 타 사업자의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보조금 추이 비교 〉

(단위 : 천원)

구 분	신규			기기변경(B)	보조금차이 (A-B)
	전체(A)	번호이동	일 반		
보조금	451	452	445	414	37

※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보조금 수준별로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는 59.2%, 기기변경 가입자는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5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는 36.9%인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27.5%로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의 보조금 차별이 크게 나타났다.

〈 보조금 지급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713	388	5,918	567	3,265	6,338
(점유율)	4.1%	2.3%	34.4%	3.3%	19.0%	36.9%
기기변경	94	78	2,397	308	843	1,412
(점유율)	1.9%	1.5%	46.7%	6.0%	16.4%	27.5%

다. 보조금 밴드별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분석대상 가입자를 보조금 밴드별로 분석한 결과, 40만원 초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53.1%인데 반해 20만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가 5.7%로 가입자 간 보조금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조금 밴드별 가입자 비중 〉

(단위 : 명)

구 분	10만원 이하	10~20 만원	20~27 만원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만원 초과	합계
가입자	807	466	7,930	385	875	4,108	7,750	22,321
비 중	3.7%	2.1%	35.5%	1.7%	3.9%	18.4%	34.7%	100.0%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4] 5.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판단기준

'10.9.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시 확정된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가입자 모집 비용이 그 가입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

1)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 ×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재고소진 목적의 보조금³⁾은 적법하다고 인정

3) '12년 이통 3사 가입자의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0개월(SKT는 20개월, KT는 21개월, LGU+는 18개월로 평균 20개월)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개통일 기준으로 20개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재고 단말기로 간주

3. 위반율

가. 전체 위반율

피심인의 전체 조사대상 22,321건 중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건수가 13,118건으로 전체 위반율은 58.7%였으며, 평균 보조금은 442천원이었다.

〈 전체 위반율과 평균 보조금 〉

(단위 : 건, 천원)

구분	조사대상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평균보조금
LGU+	22,321	13,118	58.7%	442

나. 가입형태별 위반율

번호이동 위반율은 62.5%로 010신규 가입의 위반율 52.7% 및 기기변경 위반율 51.6%에 비해 10% 이상 높았으며, 타 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형태별 보조금 지급 수준도 평균 38천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가입형태별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였다.

〈 가입형태별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 출고가	평균 보조금	위 반 율
전 체	838	442	58.7%
010신규	842	445	52.7%
번호이동	820	452	62.5%
기기변경	884	414	51.6%

다.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조사대상 자료 중 위반건수 13,118건에 대한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⁶⁾을 살펴보면, 60~70만 원대가 전체 대비 35.6%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50만 원 이상 지급받은 비율도 전체 대비 5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

(단위 : 건)

구 분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60 만원	60~70 만원	70~80 만원	80~90 만원	90~100 만원	100만원 초과	합 계
위반 건수	385	875	4,108	915	4,672	1,212	464	206	281	13,118
분 포 율	3.0%	6.7%	31.3%	7.0%	35.6%	9.2%	3.5%	1.6%	2.1%	100.0%

6) 위법성 판단기준인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하는 위반건수에 대한 분포율임

4. 소결

피심인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시정조치 명령

1.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V. 신규모집 금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14일간(신규모집 금지 시기는 차기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후 통보)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 정지는 가입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재판매 등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MVNO사업자의 신규 가입은 제외),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을 포함한다.

VI.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연평균 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 및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이 부과 상한액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별표 5] I. 2호),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376억 원이다.

나. 기준 과징금

평균 위반율이 58.7%임을 고려하여 관련매출액(3,239.6억원)에 1.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45.3억 원이다.

2. 필수적 가중

최근 3년간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5회('11.9월, '12.12월, '13.3월, '13.7월, '13.12월) 받았으며, 이번 위반행위가 6회째이므로 3회째부터 10%씩 가산하여 기준 과징금의 40%를 가산한다.

3. 추가적 가중

과열주도사업자인 피심인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30%를 추가 가중한다.

4.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의 과징금은 82.5억원이다.

VII.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VIII.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 3. 13.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이 경 재



부위원장

김 충 식



위 원

홍 성 규



위 원

김 대 희



위 원

양 문 석

